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76호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1차)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 가능 ('19년 신설)* 단, 최종 선정 전(前)까지 채무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 □ 지원규모 : 총 245명 내외
-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마케팅비 등 사업화 지원,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보육공간 등 패키지 지원

< 지원 내용 >

구분 일반형(245명 내외)

사업화 지원 (1차 년도)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8개월, 60백만원 한도)

⇒ (평가) 후속·연계지원 (2차 년도)

후속지원 (5개월, 20백만원 내외)

2.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①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② 프로그램	재창업 교육	공통과정	실패원인분석, 재창업 기초 소양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
		선택과정	수출, 투자, 마케팅 등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지원	멘토랑네트워킹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정기 및 수시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수시 지원)	
③ 인프라 지원		창업활동을	· 위한 입주공간 제공 (별도 평가를 통해 제공)

①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선정 평가를 통해 40~60백만원 차등 지원 (지원기간 : 협약 후 8개월 이내)
- ㅇ 사업비 구성

* ТОН	저ㅂ귀의그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현금	현물*	소계
100%	75% 이하	5% 이상	20% 이하	25%
(예시) 80백만원	60백만원	4백만원	16백만원	20백만원

* 현물은 (예비)재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② 프로그램 지원: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 (재창업교육) 공통·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50시간 이상 교육 지원
 - (공통과정)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재창업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사업 역량강화 교육 (40시간 내외)
 - (선택과정) 수출·투자·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 교육 (10시간 내외, 주관기관별 실시)
 -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 및 선택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후속지원 평가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멘토링) 재창업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기·수시 멘토링 지원
- (네트워킹)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③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제공 예정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①예비 재창업자 또는 ^②재창업 3년 이내 ('16.2.18일 이후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 재창업자

□ 사업 공고일 ('19.2.18)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u>협약 종료일</u>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②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6.2.18 이후 재창업한 기업)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3.18)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3.18)까지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 ④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3.18)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⑤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또는 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4. 사업신청

- □ 신청기간 : '19. 2. 18(월) ~ '19. 3. 18(월), 18:00까지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1개 주관기관을 '필수 선택'**하여 **신청*** (신청 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
 - * 1개 주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주관기관 신청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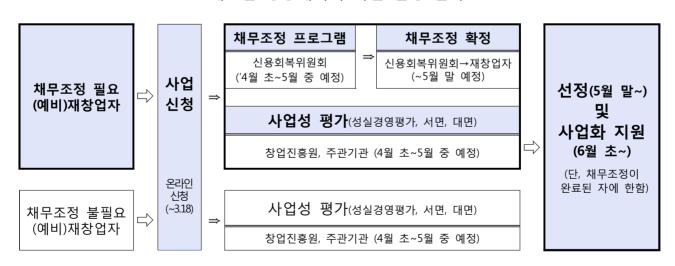
< 신청 절차 >

- ① K-startup 접속 \rightarrow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rightarrow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rightarrow ④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신청 \rightarrow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rightarrow ⑥ 기본 정보 입력 \rightarrow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rightarrow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업로드 용량은 '50메가바이트(MB)'로 제한되며, 초과 시 등록 불가
- ※ 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해 '마감일 2~3일 전' 온라인 신청접수 권장
-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신청시 '채무조정 필요 여부' 필수 체크
 - 또한, 신청시 방문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상담 가능 일자 선택
-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평균 2개월 소요) 참여를 위해 조기 신청·접수 권장

< 진행 절차 >

- ① 온라인을 통한 사업신청 완료 \to ② 채무조정 필요자에 한해 해당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유선을 통해 상담일정 확정 및 지참서류 안내 \to ③ 지부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가능 여부 확인 \to ④ 적격자에 한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to ⑤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가 불가능한 (예비)재창업자는 동 사업 신청(지원) 불가

<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선정 절차 >



* 온라인 신청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5. 평가 방법 및 절차

- □ (평가방법) 전담기관의 성실경영평가 및 주관기관별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선정
 - ①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 ② (서면평가) 문제인식 수준(폐업원인 분석 등)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 ③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병행하여 IR방식의 대면평가 실시 → 최종선정

< 서면/대면평가 항목 세부내용* >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	폐업(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창업아이템의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등
팀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등

* 세부 평가 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주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구분	① 성실경영평가	② 서면평가	③ 대면평가	
구문 일정	~'19.4월 초	~'19.4월 말	~'19.5월 중	
비고	불성실 판정 시 소명기회 부여(1회)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멘토링, IR방식의 평가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가점사항

[2점] ① ~ ④ 항목별 각 2점 부여

-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아이템 * 관련 산업군 [참고 4] 참조
- ② 2018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

- ③ 청년('19년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④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 거주자

[1점] ① ~ ⑦ 항목별 각 1점 부여

- 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 ②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 ③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 ④ 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⑤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 추천자
- ⑥ 최근 2년 이내('17.2.18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등) 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⑦ 최근 2년 이내('17.2.18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 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이수자 * 온라인 교육 이수 제외
- ※ 신청.접수 마감일('19.3.18) 기준 해당 가점 보유자
- ※ 복수의 가점(1, 2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4점 부여
-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신청당시 증빙서류를 누락할 경우 가점취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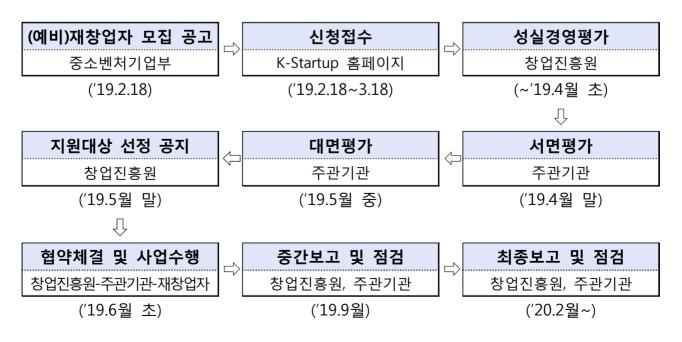
6. 선정자의 의무

-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 (시제품 제작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 재창업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재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통 및 선택과정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기관(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참고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3.18)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채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 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최종 선정 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8.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참고1】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관련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문화재도전부

5 (042) 480-4435, 4436, 4437

○ 주관기관*:총 6개 기관

* 주요역할: 재창업자 선정, 사업화(사업비 집행·관리) 지원,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번호	소재지	주관기관 명	연락처
1	서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365
2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74
3	충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44-999-1048
4	강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769-1907, 1909
5	영남	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68, 1869
6	호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2, 1303

- □ 신용회복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참고2]

사업화 자금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 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구입비 (공구.기구, 비품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ф비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3]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참고4]

4차 산업혁명 관련 가점 분야

□ 15개 분야, 122개 기술개발테마

분야		기술개발테마
1		음성인식 SW
	2	영상처리 시스템
	3	인공지능 플랫폼
AI/	4	인지과학 SW
빅데이터	5	빅데이터 기반 SW
	6	Cloud Brokering
	7	Cloud service
	8	가상화/컨테이너
	1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2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3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5G	4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30	5	massive MCT 기술
	6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7	고속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1	생체인증
	2	클라우드 보안
	3	사물 인터넷 보안
ᆔ	4	모바일 보안
정보 보호	5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6	지능형 자동차 보안
	7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8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9	지능형 영상보안
	1	광학부품 및 기기
	2	반도체 검사장비
	3	반도체 공정장비
	4	반도체 패키징 소재
지능형 센서	5	전력반도체소자
[겐시	6	고주파 반도체
	7	SoC 부품
	8	반도체 센서
	9	반도체 화학 소재

분야		기술개발테마		
E 71	1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2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3	디스플레이 도구		
AR/VR	4	AR/VR 서비스용 콘텐츠		
	5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6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7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1	피코 프로젝터		
	2	스마트 미러		
	3	에어가전		
스마트	4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스마트 가전	5	스마트 비서		
	6	융·복합형 정수기		
	7	스마트 키친 디바이스		
	8	고효율 난방기기		
	1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2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3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4	물류 로봇		
로봇	5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		
	7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8	가전 로봇		
	1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2	자율주행차량용 카메라		
	3	정보제공 시스템		
미개취	4	자율주행자량의 Lidar		
미래형 자동차	5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6	친환경 경량화 부품		
	7	전력변환 시스템		
	8	전기구동 시스템		
	9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분야		기술개발테마	
<u> </u>	1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2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3	스마트 제조 CPS	
ᄉ마ᄐ	4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스마트 공장	5	스마트 제조 AR/VR	
	6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7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8	스마트공장 플랫폼	
	1	유전체분석 및 정보 분석	
	2	바이오칩	
	3	분자진단	
	4	면역화학진단	
바이오	5	웰빙 전통식품	
	6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7	기능성 화장품	
	8	아토피개선 화장품	
	9	부착형 화장품	
	1	스마트 시계/밴드	
	2	스마트 신발	
	3	스마트 의류	
웨어 러블	4	스마트패치	
러블	5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6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7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8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1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2	소형지게차 기술	
물류	3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2 11	4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5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6	스마트 물류창고	
	1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2	안전사고 대응 자능형 모니터링사스템	
안전	3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4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5 6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범죄 대응 시스템	
	J	ㅁ쒸 네ㅇ 시ㅡㅁ	

분야		기술개발테마
	1	대기오염 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2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3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4	연료전지용 M-BOP
	5	xEMS 시스템
	6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7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에너지	8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9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10	초고용량 커패시터
	11	이차전지 전해질
	12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13	태양광 발전시스템
	14	태양광 공정장비
	15	소형풍력발전기
	1	생활밀착형 스마트 디바이스
	2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홈	3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4	홈/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5	지능형 HEMS

【참고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09년 ~ '18년

-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프로그램 (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창업 및 분사지원 사업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맞춤형사업
 -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2,3단계)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명칭 등이 추후 변경될 예정으로 '19년도 참여·수행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별도 확인 필요